

일본, 유기농업추진법 개요

정은미*

일본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유기농업추진법)’을 제정하여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62명의 의원입법으로 승인된 이 법은 농정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동안 유기농업운동을 전개해 온 민간의 여론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선언적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유기농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자와 소비자, 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실천한 유기농업운동이 시초이며 1992년 농림수산성이 ‘환경보전형 농산물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는 유기농업을 포함한 환경보전형 농업이 농정의 대상이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이는 환경보전형 농업에서 한 발 나아가 유기농업을 법률로 추진한 일본의 사례는 유기농산물 시장이 매년 크게 성장하는 동아시아 지역 농업 대응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유기농업추진법’의 주요 내용과 이 법의 추진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eongem@krei.re.kr 02-3299-4311

1. 유기농업추진법 개요

1.1. 목적

이 법률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며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유기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1.2. 정의

이 법률에서 ‘유기농업’이란 기본적으로 화학합성된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며 농업생산으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가능한 한 줄인 농업생산 방법을 사용하는 농업을 말한다.

1.3. 기본이념

(1) 농업자가 쉽게 유기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유기농업 추진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환경과 조화로운 농업 생산 확보가 중요하고, 유기농업이 농업의 자연 순환기능(농업생산 활동이 자연계에서 생물을 매개로 하는 물질 순환에 의존하며 한편으로 촉진하는 기능)을 크게 증진하고 농업생산으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줄이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농업자가 용이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조직하고 소비자가 유기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유기농업 추진은, 소비자의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고급화하고 다양화하며 소비자의 안전 또는 양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

농업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농산물로 공급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며, 농업자나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용이하게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3) 유기농업자, 유기농산물의 유통·판매자와 소비자의 연계

유기농업 추진은, 소비자의 유기농업과 유기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고 보며 유기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자(이하 ‘유기농업자’) 및 관계자와 소비자의 연계 촉진을 도모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4) 농업자나 기타 관계자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추진

유기농업 추진은, 농업자와 관계자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 조항에서 정한 기본이념에 따라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갖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자와 관계자 및 소비자의 협력을 얻으며 유기농업을 추진한다.

1.5. 기본방침과 추진계획

(1) 기본방침

농림수산대신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② 유기농업 추진 및 보급 목표에 관한 사항
- ③ 유기농업 추진에 관련된 시책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

(2) 추진계획

도도부현은 기본방침에 따라 유기농업 추진에 관련된 시책에 대한 계획(추진계획)을 정하도록 노력한다.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정촌)의 역할

(1) 기술개발 촉진

유기농업자와 유기농업을 시도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과 그 성과를 보급한다.

(2)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 증진

소비자에게 유기농업에 관한 지식 보급과 계몽을 위한 홍보활동, 가타 소비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3) 유기농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이해 증진

유기농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와 소비자의 교류 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4) 조사 실시

유기농업 추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5) 유기농업 추진을 위한 활동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유기농업 추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1.7. 기타

(1)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해 필요한 지도, 조언, 기타 원조를 할 수 있다.

(2) 유기농업자의 의견 반영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 책정할 때는 유기농업자와 관계자 및 소비자에게 해당시책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2. 유기농업추진법의 과제*

2.1. '준유기농업'을 포함하는가

유기농업추진법에서 유기농업의 정의는 '농림물자의 규격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에 준거한 유기농산물 생산만을 유기농업이라고 명기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JAS법에 준거하지 않지만 화학비료, 화학합성농약, 유전자조작을 이용하지 않고 환경 부담을 가능한 적게 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가칭 준유기농업이라고 함)을 유기농업으로서 이 법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생산은 JAS법의 생산기준에 준거하면서 JAS법이 요구하는 검사기관의 인증제도는 생산자를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될 수 있으면 신뢰관계를 부정하고 그럼에도 고액 경비 요구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기에 JAS인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법적으로는 유기농산물로서 판매할 수 없음).

이러한 준유기농업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문제이다. 즉 유기농업추진

* 西尾道徳 「환경보전형농업레포트」 No.68를 참조함.

법이 JAS법에 준거하여 유기인증을 받은 유기농업만 인증하지 않고 ‘준유기농업’을 대상외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준유기농업’이 유기농업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 검사료를 보조하는 형태로 갈 것인가가 과제이다.

2.2. 환경부하 경감의 담보

유기농업이 농업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가능한 한 줄이는 농업생산 방법이며 그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그것을 담보할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과제이다.

예를 들면 현재도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과잉투여하여 질산 농도가 높은 채소를 생산하고 환경에 질산이나 인산을 방출하고 있는 집약적인 유기농업도 존재한다. 또한 여름철 호우 침식으로 토양유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환경부하 방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설치할 것인가도 큰 과제이다.

2.3. 환경지표 가치 향상의 평가

건전한 유기농업은 농업에 의한 환경 부하를 경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지가 가진 공익적 기능(국토보전 기능,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 유지 등) 향상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러한 양(+)의 효과를 유기농업추진법은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2.4.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EU는 유기생산자에게 전환기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이 점을 포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수행하는 각종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법의 초점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http://lib.ruralnet.or.jp/libnews/nishio/nishio068.htm>

西尾道徳, 「환경보전형농업레포트」 No.68, 農文協